# 부천시 자연학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9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10. 17) 상정

○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10. 17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과장 정 규 열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부천식물원 개원에 따라 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 관람요금을 현실화하고, 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등,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# 나. 주요골자

- 부천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의 관람료를 상향 조정함. (안 별표)
- 자연학습장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중 현 실정에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4조제5호·제17조·제18조·제19조 제1항 제2호·제20조·제21조 및 별표 2)

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# 집 의 내 용 □ 변 내 용 □ 부천무역에 위탁 중인 시설의 관리 및 청결 상태가 매우 열악 한바, 농산지원과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. □ 관람료 인상 관련, 자연학습장 운영에 있어 경영상의 수지 개선 정도는? □ 작업 변 내 용 □ 관리 및 청결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시민들의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음. □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자연 학습장의 건립 취지에 맞게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 운영 하고자 함.

# 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- 없 음
- 5. 심사결과
  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
 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 - 없 음

#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호
의결	2006. 10. 19
년월일	(제131회)

제출년월일: 2006. 9. 29

제 출 자: 부천시장

# □ 제안이유

○ 부천식물원 개원에 따라 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 관람요 금을 현실화하고, 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등, 그 밖 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# □ 주요골자

- 가. 부천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의 관람료를 상향 조정함.(안 별표)
- 나. 자연학습장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중 현 실정에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4조제5호·제17조·제18조·제19조제 1항제2호·제20조·제21조 및 별표 2)

#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"를 "부천시 자연학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2조중 "춘의동 372-1"을 "춘의동 381번지"로 한다.

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동물원·식물원·농경유물전시관·자연생태박물관 및 수목원 등 체험학습시설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휴관일) 자연학습장의 정기 및 임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- 1. 정기휴관일 : 1월1일, 추석날, 설날,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)
- 2. 임시휴관일
  - 가.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
  - 나. 시설의 보수를 하는 경우
  - 다.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
라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 제11조중 "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"를 "「부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제12조중 "별표 1과"를 "별표와"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"각호의 1"을 "각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	소관 실・과・소	농산지원과				
입	담당과장	정규열				
안	담당팀장	김경숙				
자	담당자	윤희찬(320-3976)				

# [별표]

# 자연학습장 관람료(제12조관련)

구 분	자연생태박물관			부천식물원				자연생태박물관 + 부천식물원			비고		
<b>'</b>	Ľ	개	인	단	체	개	인	단	체	개 '	인	단 체	
0~3세 여 어르신(65세		무 료		_		무 료		_	_	무 5	豆	_	
4~12세 어린(		700		600		700		60	00	1,30	00	1,100	
중·고등학생 및 군인		1,0	00	80	00	1,0	000	80	00	1,80	00	1,400	
어	른	1,2	00	1,000		1,200		1,0	000	2,20	00	1,800	

• 단체 : 유아원 · 유치원의 경우 20인 이하도 단체 인솔일 때에는

단체 요금을 적용

• 군인 : 제복을 입은 사병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	정	Ċ	간	
부천시자연학습장설	치및운영에	관	부천시	자연	학습장	설치	및	운영
한조례			에 관한	조례	-			
제2조(위치) 자연학	습장은 부천	신	제2조(유	의치)				
원미구 춘의동 372	<u>-1</u> 로 한다.			춘의동	등 381번	[ス]		
제5조(시설) 시장은	자연학습정	l-에	제5조(시	시설) ·				
다음 각호의 시설	을 갖추어	시						
민에게 삶의 질을	을 향상시키	고						
농업의 경쟁력 제	고 및 자연	학						
습의 기회를 제공학	한다.							
1. (생 략)			1. (현	·행과	같음)			
2. 동・식물원・농	업생활사(집	<u>.</u>	2. <del>z</del>	동물원	• 식물	원·농	경유	물전
풀・농경유물 등	) · 자연학습	관	시 국	란・자	·연생태	박물관	및	! 수
(곤충 및 민물	고기의 생태	1전	목:	원 등	체험학	습시설	<u>-</u>	
시관, 공룡화석	관련 전시	]관						
<u>등) · 대강당(예스</u>	장・영상홍	-보						
실 등겸용)등 교	양시설							
제6조(휴관일) 시장-	은 시설의	유	제6조(휴	후관일	) 자연	학습장	-의	정기
지・관리 및 보수	등을 위히	여	및 임	시 휴	관일은	다음과	라 길	<u>다.</u>
정기 또는 임시휴	관일을 정히	-여	1. 정	기휴관	<u> </u>	월1일	, 추	석날,
운영할 수 있다.			<u>설</u> 님	날, 매	주 월요	오일(다	만,	월요
			일(	이 공급	휴일인	경우어	는	다음
			<u>날)</u>					
			2. 임	시휴관	<u> 일</u>			

나. 시설의 보수를 하는 경우 다.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 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9조(해임)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 제9조(해임) ------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해촉할 수 있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자연제11조(운영의 위탁) -----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-----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-----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 촉진 및 관리 조례」-----여 운영할 수 있다. 제12조(관람료) 시설물의 유지, 관 제12조(관람료) ------리, 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 경 조성 등을 위하여 관람료를 -----별표와----징수하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 이 한다. 제13조(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) 제13조(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게 나 퇴장을 명 할수 있다. 다만, 관람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----

가.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

사를 하는 경우

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	
아니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관람료의 감면) 시장은 다	제14조(관람료의 감면)
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자에	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
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 할 수	
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	
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	
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단체 입장을 할 때. 다만, 20	_〈삭 제〉_
인 이상 이어야 한다.	
제16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<u>각</u>	제16조(사용제한) <u>각</u>
<u>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	호의 어느 하나
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	
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사용료) ①자연학습장의 시	_〈삭 제〉_
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	
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	
납입하여야 한다.	
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	
탁운영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	
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	
③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이	
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	

④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 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 수 입액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입하 여야 한다.

⑤관람료 징수를 위한 자연학습 장 시설 사용일수가 2일 이상 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 할 수 있다.

제18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공 〈삭 제〉 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 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9조(허가의 취소) 시장은 다음 제19조(허가의 취소)-----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 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 지시킬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- 3. ~ 5 (생략)

제20조(사용료 반환) 납부된 사용 〈삭 제〉 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할 수 있다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〈삭 제〉

3. ~ 5 (현행과 같음)

- 1.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
- 2. 시의 <u>사정으로 사용이 중지</u> 되었을 때
- 3.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

   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

  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

   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

제21조(사용중단 신고)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〈삭 제〉